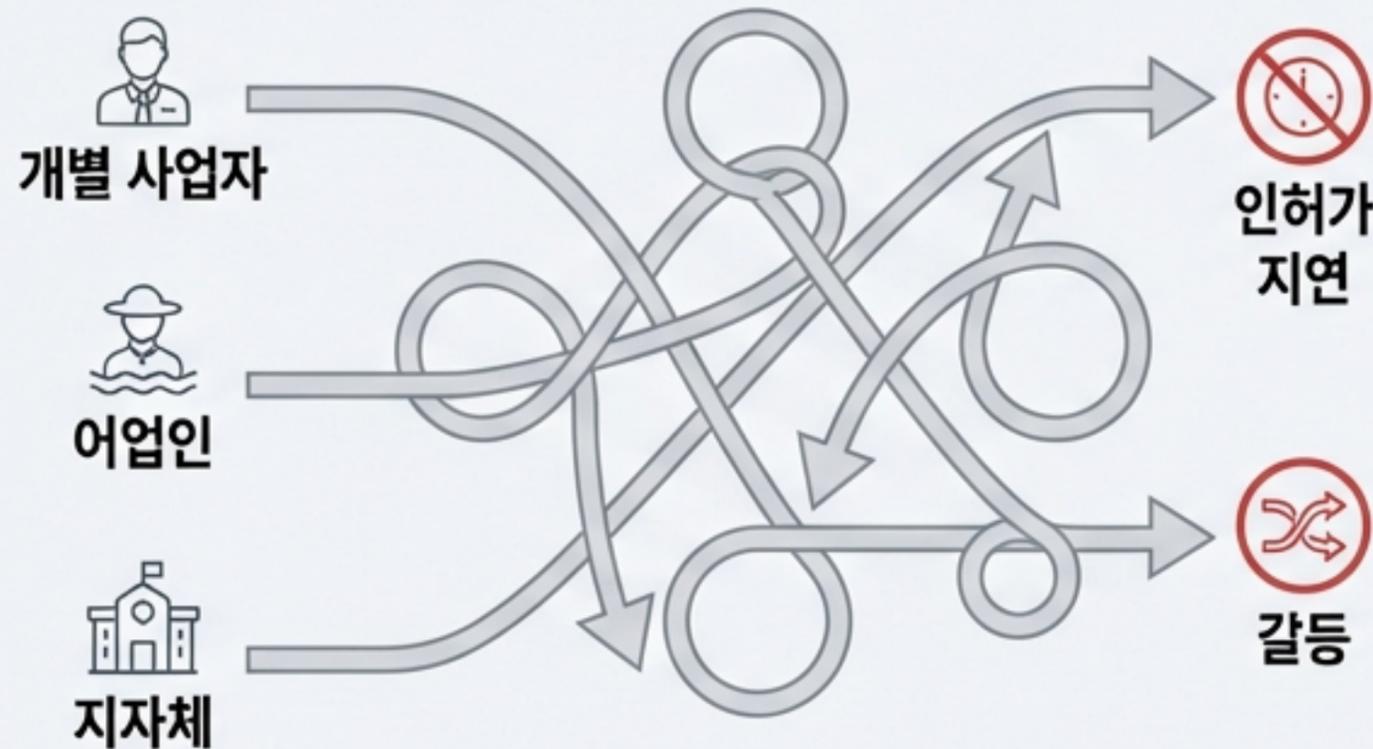




# 왜 새로운 법이 필요한가?: 계획입지 도입 배경 및 목적

## 과거: 복잡한 인허가 및 주민 수용성 문제



- 개별 사업자 주도의 입지 발굴로 인한 난개발 우려
- 30여 개에 달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 지연
-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

## 현재: 정부 주도 계획입지 도입으로 불확실성 해소



### [법 제1조] 목적

- 정부가 책임지고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문제 해결
-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육성
- 해양공간의 공공적, 균형적 개발 및 활용
-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기여

# 해상풍력 계획입지 추진 절차도: 새로운 청사진의 전체 구조



본 발표자료는 이 절차에 따라 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.

# 해상풍력 정책의 컨트롤 타워: 해상풍력발전위원회

## 위원회 구성 및 역할 (Committee Composition & Role)

### [법 제6조] 심의·의결 사항

- 예비·발전지구 지정 및 해제
- 기본설계 확정, 사업자 선정 및 취소
- 실시계획 승인 및 취소
- 관계 행정기관 이견 조정 및 분쟁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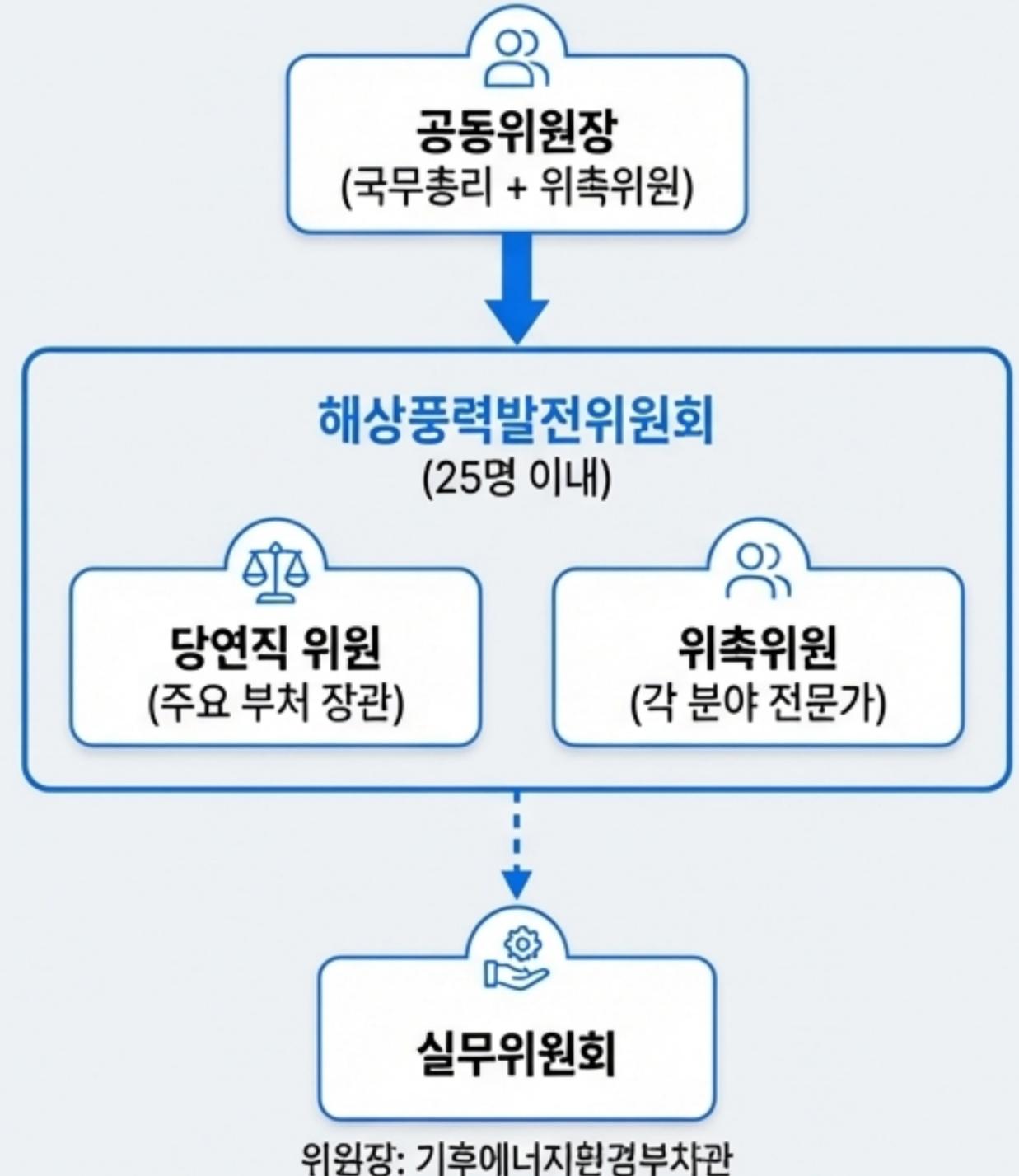
### [법 제7조] 위원회 구성(25명 이내)

- **공동위원장 (2명):** 국무총리, 위촉위원 중 대통령 지명 1인
- **당연직 위원:** 재정경제부, 국방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
- **위촉위원:** 에너지, 환경, 수산업, 금융, 갈등조정 등 각 분야 전문가

## 실무위원회 운영 (Working-level Committee Operation)

### [시행령 제5조] 실무위원회 위임 사항

- 위원회가 위임하는 '경미한 사항'을 구체화
  - 예: 기본설계 변경, 분쟁 조정,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, 사업자 선정취소 조치 등
- **실무위원장:**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
- **목적:** 전문적이고 신속한 실무 처리



# 1단계: 예비지구 지정 - 잠재력 있는 해상풍력 입지 확보



## [법 제14조] 예비지구 지정 요건 (Act §14: Designation Requirements)

- 적합한 풍황 보유
- 어업활동 영향 최소화
- 해상교통 안전 확보
- 해양환경·생태계 영향 최소화
- 군사작전 영향 최소화

'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'

## [시행령 제11조] 예비지구 지정요건 구체화 (Decree §11: Specific Requirements)

위 법을 요건에 더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:

1. 「국가유산기본법」에 따른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
2. 기존의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
3.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인 해역이 아닐 것

지정 절차: 지자체 신청 또는 정부 직권 → 관계기관 의견수렴 → 위원회 심의·의결 → 지정·고시

## 2단계: 기본설계 수립 및 영향조사 - 사업의 구체적 계획 마련



### [법 제16조]

- 지구의 명칭·위치·면적
- 발전시설 배치 및 용량
-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기반시설 계획
-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
- 사전조사 계획 (환경성·안전성·영향성 등)

### [법 제16조 ③]

기본설계 수립 전, 해양환경적 측면 영향조사 실시 및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의무화

### [시행령 제14조]

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'해양환경영향조사서'를 작성하여 해수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
- 공유수면 외 지역은 '환경영향조사서'를 별도 작성
- 해수부 장관은 30일 이내(20일 연장 가능) 협의의견 회신

# 3단계: 민관협의회 운영 - 주민 수용성 확보의 핵심 메커니즘

## 민관협의회 구성 원칙 (Principles of Council Composition)

### [법 제17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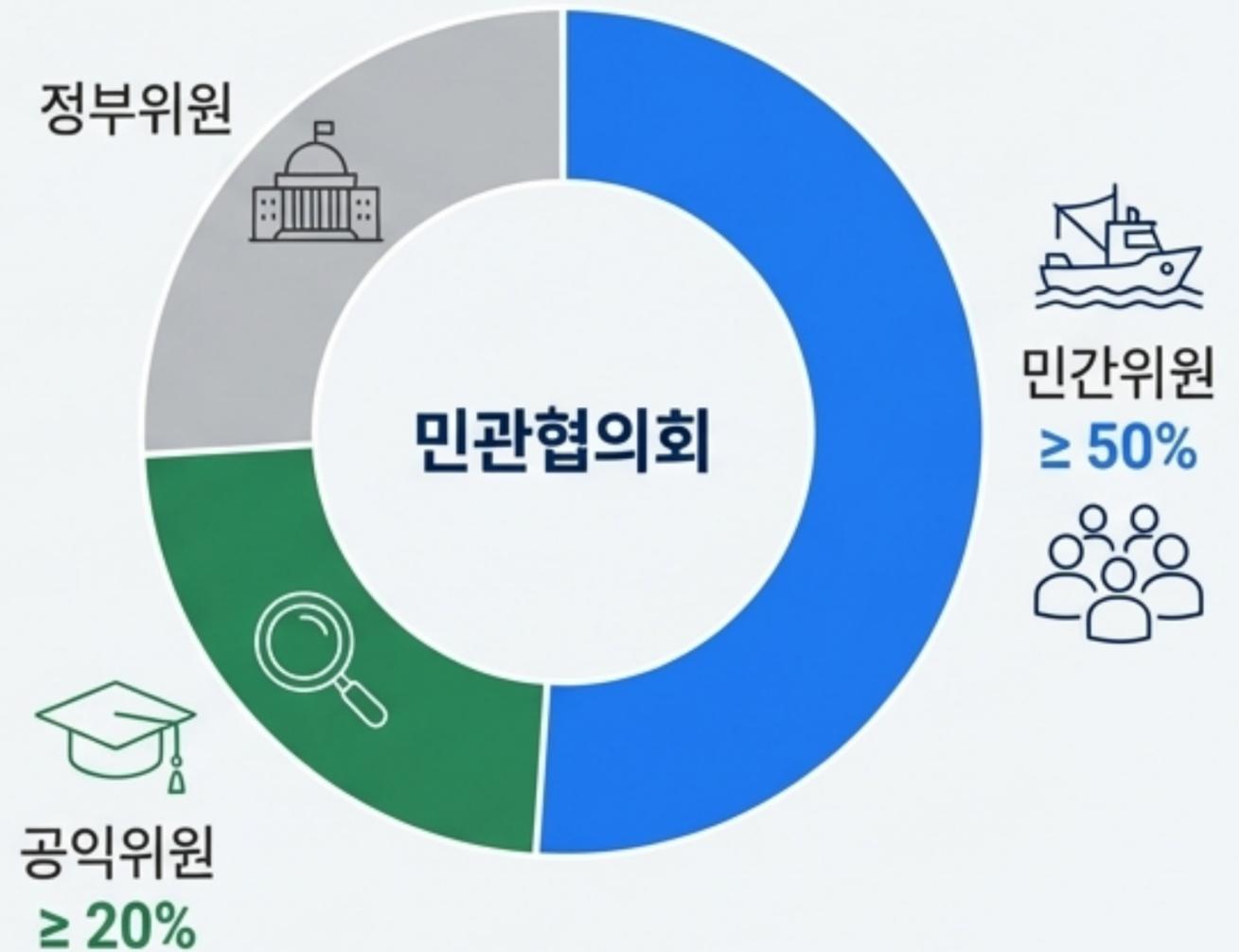
어업인, 주민대표,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 의무화

### [시행령 제15조] 구성 및 비율 명시

- **위원 구성:** 정부위원, 민간위원, 공익위원
- **핵심 구성 비율:**
  - 민간위원 (어업인, 주민대표 등)  $\geq 50\%$
  - 공익위원 (전문가 등)  $\geq 20\%$
- **위원장:** 정부위원 중 1명, 민간/공익위원 중 1명 공동위원장 체제
- **목표:**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

### 의사결정 및 분쟁조정 (Decision-Making & Dispute Resolution)

- **[시행령 제16조]:** 위원 전체 합의 원칙. 합의 불가 시, 재적위원 2/3 출석 및 출석위원 2/3 찬성으로 의결
- **[시행령 제21조]:** 합의·의결 실패 시, 지자체장은 위원회에 **분쟁 조정 신청 가능**. 실무위원회가 조정안 작성 및 권고.



## 4단계: 발전지구 지정 - 사업 추진을 위한 구역 확정



### 발전지구 지정 선행조건

- ✓ 예비지구 지정 완료
- ✓ 기본설계 수립 완료
- ✓ 민관협의회 협의 완료

### [법 제19조] 발전지구 지정 요건 (Act §19: Designation Requirements)

- 경제성 확보 가능한 풍황 보유
- 기반시설 조성 가능성
-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성
-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
- 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’

### [시행령 제22조] 지정요건 구체화 (Decree §22: Specific Requirements)

위 법률 요건에 더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:

1.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
2.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환경성조사 및 환경성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

# 5단계: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- 최적의 파트너 선정

## 선정 평가 기준

### [법 제24조] 평가 고려사항

- 발전단가 등 사업 수행능력
- 재무건전성 및 자금 조달능력
- 이익공유 등 수용성 확보 노력
- 국내 산업경쟁력 기여도
- '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'

### [시행령 제26조] 평가사항 구체화

1. 에너지안보 및 안전확보 계획
2.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노력
3. 사업비 적정성
4. 해체 및 원상복구 계획

## 선정 절차

1



1. 입찰공고 및  
사업자선정신청서 제출  
[시행령 제27조]

2



2. 입찰평가위원회  
공정 평가  
[시행령 제28조]

3



3. 위원회 심의·의결 후  
최종 선정

# 6단계: 실시계획 승인 - 통합 인허가를 통한 사업 가속화

##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 및 효력 (Key Contents & Effect)

### [법 제25조] 실시계획 포함 사항

- 사업 구역 위치 및 면적, 시행기간
- 자금 조달 계획
- **민관협의회 협의 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**
- 어업권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
-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

### 인허가 의제 (Deemed Permits)

[법 제27조]: 실시계획 승인 시, 28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

#### 주요 의제 인허가 예시

-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(공유수면법)
-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(국토계획법)
- 개발행위 허가 (국토계획법)
- 농지전용 허가 (농지법)
- 산지전용 허가 (산지관리법)
- 전기사업 허가 (전기사업법)
-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(항만법)



# 환경성평가 절차 - 사업 시행 단계의 환경 영향 검토

[법 제26조]: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,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

[시행령 제32조]  
평가 절차

평가항목 결정

- 환경성평가협의회 구성·운영
- 기본설계 단계의 영향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필요 항목 결정

평가서 작성

- 사업자는 결정된 평가항목에 따라 환경성평가서 작성

의견 수렴

- 평가서를 지자체(민관협의회 운영 주체)에 제출하여 의견 수렴

[시행령 제33조]  
협의 및 검토

협의 및 검토  
협의 및 검토

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서(공유수면 관련)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
- 협의·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자에게 통보, 사업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

## 절차 간소화 (Simplified Procedure)

기존 '환경영향평가법' 및 '해양이용영향평가법' 상의 협의를 이 절차로 같음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(법 제26조 ③).

# 7단계: 건설, 준공 및 계통연계 - 청정에너지 생산의 시작

## 착공 및 준공 (Construction & Completio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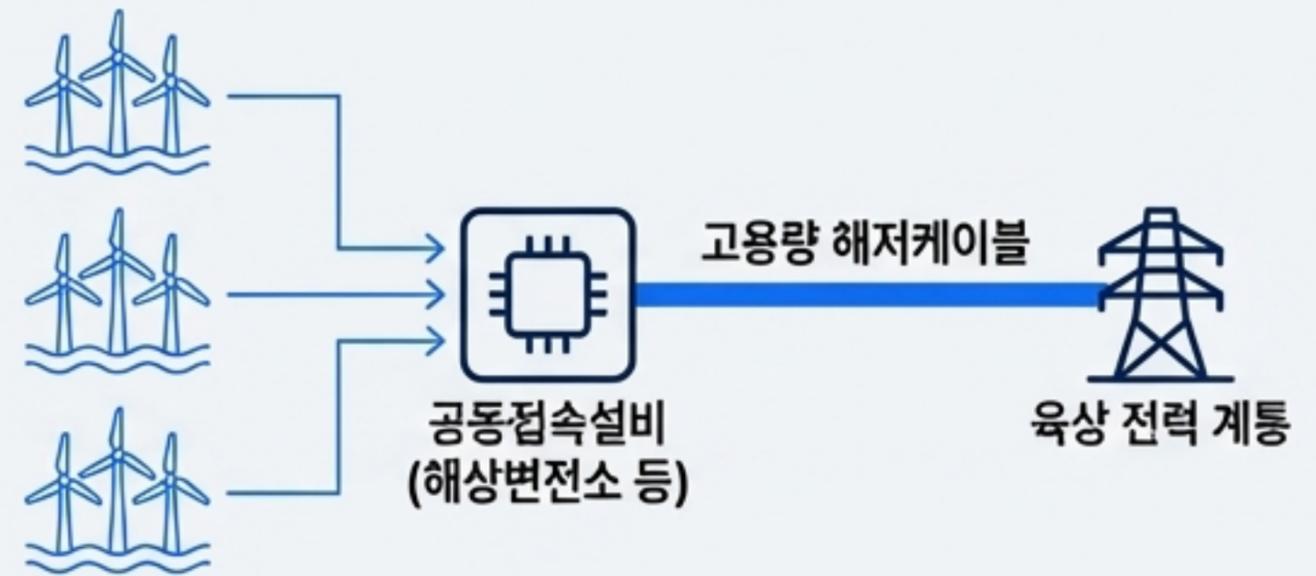
### [법 제30조] 착공 신고

사업자는 착공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

### [법 제31조] 준공 인가

- ✓ 사업 완료 후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준공 인가 신청
- ✓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 준공 인가
- ✓ 준공 인가 시, 타 법률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·인가 등도 받은 것으로 간주 (준공 절차 의제)

## 공동접속설비 구축 (Shared Grid Connection)



### [법 제20조]

정부는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할 수 있음

### [시행령 제23조] 대상 및 범위

- 대상 규모: 인접 설비용량 합이 1,000MW를 초과하는 발전지구
- 설비 범위: 발전단지 내부망 집합지점부터 송전사업자 계통연계점까지의 해저케이블, 변전소, 전선로 등
- 목적: 개별 사업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, 대규모 단지의 효율적 계통 연계 지원

#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육성 및 지원



## 1. 기술 개발 촉진 ([법 제34조])

해상풍력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 
연구개발, 실용화, 표준화 지원



## 2. 전문인력 양성 ([법 제35조])

[시행령 제40조] 양성 분야 구체화:  
사업 개발, 핵심 기자재 설계, 설치·건설,  
운영·유지보수, 해체·재활용 등 전주기  
전문인력 양성

## 산업 생태계



## 3. 실증단지 조성 ([법 제37조])

신규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·운영  
[시행령 제41조]:  
실증단지 운영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고,  
해당 기관을 사업자로 선정 가능



## 4. 전문연구기관 지정 ([법 제38조])

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 
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

# 수산업 상생 및 연관 산업 지원



## 수산업 지원

### [법 제41조]

-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
-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
- 영향 조사·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

### [시행령 제43조] 위탁 가능 전문기관 명시

-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, 한국어촌어항공단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



## 추가 지원

### [법 제18조] 주민참여 이익공유

-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발전사업에 참여 가능하며, 참여금·금액 등에서 우대 가능

### [법 제40조] 항만 및 배후단지 지원

- 해상풍력 전용 항만, 배후단지 조성 및 관련 선박 도입·건조 지원 노력

# [종합] 해상풍력 특별법(법)과 시행령의 연계 구조

구분 (Stage)	해상풍력 특별법 (The Act: 원칙과 체계)	시행령 (The Decree: 기준과 절차)
거버넌스	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(법 제6조)	위원회 구성원, 실무위원회 위임사항 등 운영 세부규정 (시행령 제2, 5조)
지구 지정	예비·발전지구 지정 요건 원칙적 제시 (법 제14, 19조)	국가유산 영향, 해상경계 분쟁 등 구체적 지정요건 추가 (시행령 제11, 22조)
이해관계자	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 의무화 (법 제17조)	민간위원 50% 이상 등 구체적인 구성 비율 및 분쟁조정 절차 명시 (시행령 제15, 21조)
사업자 선정	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제시 (법 제24조)	사업비 적정성, 해체계획 등 세부 평가항목 및 입찰평가위원회 규정 (시행령 제26, 28조)
환경평가	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성평가 실시 의무 부여 (법 제26조)	환경성평가협의회 구성, 평가항목 결정 등 상세 이행 절차 마련 (시행령 제32, 33조)
산업 육성	전문인력 양성, 실증단지 조성 등 지원 근거 마련 (법 제35, 37조)	양성 분야, 실증단지 운영기관 조건 등 구체적 실행 방안 규정 (시행령 제40, 41조)

# 새로운 청사진을 통한 기대효과 및 미래 전망



## 1. 신속하고 질서있는 보급 확대 (Accelerated & Orderly Deployment)

-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예측 가능성 증대
-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적 기여



## 2.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(Stable Investment Environment)

- 정부 주도 입지 발굴로 사업 리스크 감소
- 국내외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관련 산업 성장 촉진



## 3. 상생 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(Sustainable Development & Coexistence)

-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
- 국내 공급망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

해상풍력 특별법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,  
대한민국 산업과 환경의 미래를 그리는 핵심 설계도입니다.